투자 위험 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유리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유리베트남알파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베트남알파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유리베트남알파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유리자산운용(주)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20 년 6 월 30 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0 년 7 월 31 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 조 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02-2168-7900, http://www.yurieasset.co.kr)
      금융투자협회(☎ 02-2003-9000, http://www.kofia.or.kr)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 용어 정리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외국주식 등 외화자산에 투자하므로 해당 국가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따라 일부 기재항목은 기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기재가 생략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대신 기재될 수 있으니 투자판단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 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

자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 약 정 보

(작성기준일 : 2020.06.30)

유리베트남알파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주식] (펀드 코드: BC692)

투자 위험 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유리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베트남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베트남 시장 주식의 시세 변화 및 환율변동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신흥시장국가에 대한 투자는 선진국가에 대한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유리베트남알파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베트남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비교지수 : [VN Index(USD) × 80%] + [Call금리 × 20%]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외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유리베트남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유리베트남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베트남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60%이상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차익을 추구합니다.
- 베트남의 업종 대표주와 업종 내 우량 중소형주를 동시에 편입
  : 각 업종 대표주 위주로 투자하되, 업종 내 우량 중소형주 발굴을 통해 추가 수익기회 창출 추구
- 성장성이 높고 진입장벽이 있는 금융업 및 실적이 좋고 장기성장성이 있는 제조업 등에 투자
- 각종 정책 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에 투자

※ 이 투자신탁은 베트남 주식 종목 선정 및 포트폴리오 구성 등 투자판단시 피데스자산운용㈜의 자문서비스를 참고하여 투자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모자형,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 보수	판매 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	-	1.695	0.96	1.950	183	374	575	1,009	2,296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e)	-	1.215	0.48	1.670	134	276	424	743	1,691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상기 총비용 예시는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주2)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 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9/07/13~ 20/07/12	18/07/13~ 20/07/12	17/07/13~ 20/07/12	15/07/13~ 20/07/1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	2016/07/13	-9.85	-2.99	-1.37	-	1.97
비교지수	2016/07/13	-6.7	1.09	3.86	-	5.68
수익률 변동성	2016/07/13	22.57	18.95	18.6	-	16.72

주1) 비교지수 : - 2019년 10월 4일 이후 : [VN Index(USD) × 80%] + [Call금리 × 20%]
- 2016년 7월 13일 ~ 2019년 10월 3일 : [VN Index(USD) × 70%] + [Call금리 × 30%]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 평균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투자신탁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투자신탁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운용 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주식형)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자기구 수(개)	운용 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한진규	1969	책임 (CIO)	21	1,463	1.83	1.04	3.51	2.56	20년 5개월
안재정	1972	부책임 (본부장)			1.83	-			1년 11개월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해외투자본부가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유리자산운용이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유리자산운용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 위험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구분	투자위험 주요 내용
원금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위탁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환율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주식 외의 해외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으므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외화표시자산에의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의 관리를 위해 환헤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를 실행할 경우 외국통화의 가치가 원화에 대비하여 하락하는 때에는 환헤지포지션에서 이익이 발생하여 외화자산의 환손실을 상쇄함으로써 투자신탁의 성과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지만, 외국통화의 가치가 원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때에는 환헤지포지션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외화자산에서 발생하는 환이익을 상쇄함으로써 투자신탁의 성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환헤지에는 일정한 비용이 수반되며 이러한 비용은 투자신탁의 성과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접근 가능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과다한 비용을 수반하는 등의 사유로 환헤지가 용이하지 않은 통화로 표시되는 외화자산에 대해서는 헤지 거래를 실행하지 않거나 당해 통화와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은 통화로 대신하여 헤지 거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헤지가 적절히 이루어 지지 않거나 상당한 수준의 의도되지 않은 외환관련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외화표시자산에의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의 관리를 위해 원/달러 선물, 선물환 또는 선도환 거래 등을 통해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원화와 USD간의 환율변동에 대하여 헤지하므로, 베트남 동화와 USD간에는 환차손 또는 환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베트남 시장의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신흥시장국가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의 투자국가인 베트남은 신흥시장국가로, 일반적으로 신흥시장국가에 대한 투자는 선진국가에 대한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신흥시장국가는 법, 사법 및 규제 기반이 계속 발전 중에 있으며 또한 현지 시장 참여자 및 그 거래상대방 모두에게 많은 법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일부 신흥시장 국가의 경우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량이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불리한 가격으로 자산을 처분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여 투자원금의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시장 및 증권거래 시스템의 후진성으로 인해 투자대상 자산의 매매 불능 및 지연 등의 가능성이 있고, 상하한폭 변경 등 잦은 제도 변경으로 인해 투자대상 자산의 매매의 적시성 및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해외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국제금융결제와 관련한 송금지연 등 사유발생시 환매금액 지급연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table>
<tr><td rowspan="2">매입 방법</td><td>-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 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 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td><td rowspan="2">환매 방법</td><td rowspan="2">-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을 적용. 9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6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을 적용. 10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td></tr>
<tr><td>환매수수료</td><td>없음</td></tr>
<tr><td>기준가</td><td colspan="3"><table>
<tr><td>산정방법</td><td>-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td></tr>
<tr><td>공시장소</td><td>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td></tr>
</table></td></tr>
<tr><td>과세</td><td colspan="3"><table>
<tr><th>구분</th><th>과세의 주요내용</th></tr>
<tr><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tr>
<tr><td>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 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td></tr>
<tr><td>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td><td>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관련세법에 따라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able></td></tr>
<tr><td>전환절차 및 방법</td><td colspan="3">해당사항 없음</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 colspan="3">유리자산운용㈜ [대표번호: 02-2168-79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yurieasset.co.kr]</td></tr>
<tr><td>모집기간</td><td>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td><td>모집 · 매출 총액</td><td>10조좌</td></tr>
<tr><td>효력발생일</td><td>2020년 7월 31일</td><td>존속 기간</td><td>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td></tr>
<tr><td>판매회사</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td></tr>
<tr><td>참조</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기구의 종류</td><td colspan="3">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table>
<tr><th colspan="2">종류(Class)</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
<tr><td>판매수수료</td><td>수수료 미징구 (C)</td><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 판매수수료후취형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 rowspan="3">판매경로</td><td>온라인(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td>오프라인</td><td>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tr>
<tr><td>온라인 슈퍼(S)</td><td>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td>기타</td><td>개인연금</td><td>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td></tr>
</table></td></tr>
</table>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yurieasset.co.kr)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yurieasset.co.kr)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유리베트남알파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주식]	BC69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	BC693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e)	BC694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BC695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종류형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 모자형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 좌

주1) 모집 개시일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개시일 : 2016년 4월 18일

나. 모집기간 : 모집 개시일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다. 모집장소 : 각 판매회사 본・지점

라.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 모집장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유리베트남알파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주식]	BC69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	BC693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e)	BC694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BC695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16.07.13	최초설정
2017.09.07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갱신
2018.01.23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매매이익 및 평가이익 유보) - 부책임운용인력 삭제 - 모펀드 변경사항 반영 - 법 개정사항 반영
2018.09.07	- 환헤지 비율 변경 -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갱신
2018.12.24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해당사항 없음 → 안재정)
2019.08.07	- 설정 후 3년 경과,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기준 및 펀드 위험등급 변경(2등급 → 3등급) -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갱신 등
2019.09.25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및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2019.10.04	- 비교지수 변경
2020.07.31	- 투자위험등급 변경(3등급 → 2등급)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용어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 이 투자신탁은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 등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유리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7 대표전화 : 02-2168-7900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4부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2020.06.30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주식형)				운용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한진규	1969	책임(CIO)	21	1,463	1.83	1.04	3.51	2.56	20년5개월
안재정	1972	부책임(본부장)			1.83	-			1년11개월
<이력>									
책임(CIO) 한진규 - '95.02~'99.01. 한국투자증권 - '00.02~현재. 유리자산운용 CIO					부책임(본부장) 안재정 - '96.08~'99.09. 도로교통공단 - '99.09~'00.06. 대한투자신탁 - '00.10~'16.10. 하나UBS자산운용 - '16.10~'17.10. 한국대성자산운용 - '17.10~'18.07. 에셋원자산운용 - '18.07~현재. 유리자산운용 해외투자본부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해외투자본부에서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유리자산운용이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 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유리자산운용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5)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구분	성명	운용기간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박상건	2016.07.13 ~ 2018.01.22
	안재정	2018.12.24 ~ 현재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1조에 의거한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며, 이 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개인연금(C-e)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 판매수수료후취형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및 당해 모투자신탁 내의 다른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 자투자신탁	유리베트남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
유리베트남알파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주식]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 유리베트남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구 분	세부 내용
주요 투자대상	외국주식 : 60% 이상, 채권 : 40% 이하 등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베트남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60%이상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차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투자위험	원금손실위험, 주식가격 변동위험, 환율위험, 국가위험, 신흥시장국가 투자 위험 등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베트남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투자대상	투자한도	투자대상 세부내용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0% 이하	유리베트남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 및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다만,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회피 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합니다)
채권	5% 이하	헤지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 거래에 증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채권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및 환매조건부매수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10% 이하	-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 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익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서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신탁계약서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 유리베트남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한도	투자대상 세부내용
주식	60% 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

		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자산유동화 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어음 등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10% 이하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 및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
환매조건부매도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으로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 기준
증권대여	50% 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 기준
증권차입	20% 이하	신탁계약서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차입허용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서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신탁계약서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투자제한 내용	적용 예외
이해관계인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신탁계약서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간
	-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투자한도 초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제18조제4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신탁계약서 제19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 유리베트남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제한 내용	적용 예외
이해관계인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신탁계약서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합니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집합투자증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간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	

	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 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계열회사 지분증권 투자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투자한도 초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제18조제5호 내지 제10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신탁계약서 제19조제2호 본문, 제3호 가목,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외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재산의 10% 이하 범위내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2) 환 위험관리

- 이 투자신탁은 외화표시자산에의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의 관리를 위해 원/달러 선물 또는 선도환 거래 등을 통해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환헤지란 통화선물 및 선도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억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환헤지를 실행할 경우 외국통화의 가치가 원화에 대비하여 하락하는 때에는 환손실이 발생하지 않아 투자신탁의 성과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외국통화의 가치가 원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때에는 환이익 획득 기회를 상실하여 투자신탁의 성과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환헤지에는 일정한 비용이 수반되며 이러한 비용은 투자신탁의 성과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원화와 USD간의 환율변동에 대하여 헤지하므로, 베트남 동화와 USD간에는 환차손 또는 환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1)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장내파생상품을 활용하는 경우는 증거금 및 수수료 등의 비용 산출이 가능하나, 장외파생상품은 장외거래 특성상 수수료등 비용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계약환율 자체에 이미 비용이 반영되어 있어 비용만을 별도 분리하여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환헤지 전략의 특성상 장내파생상품의 환헤지 비용만을 표시할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될 수 있으므로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현실적으로 완전한 환헤지는 불가능하므로 이 투자신탁은 외화표시자산에 대해 **순자산총액의 50% 이상 범위에서 환헤지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환율전망, 외환시장 상황, 비용부담, 운용자의 판단 등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예정 헤지비율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고 실제 헤지비율이 예정 헤지비율에 비해 불리한 사후적 성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비교지수 : [VN Index(USD) × 80%] + [Call금리 × 20%]**
> VN Index(Vietnam Stock Index)는 호치민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시가총액 가중평균방식으로 발표되는 지수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수를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 주)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상기의 전략은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전략이 반드시 유효하게 투자목적을 실현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유리베트남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외국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 채권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으로, 베트남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차익을 추구합니다.

<세부 운용 전략>

- 베트남의 업종 대표주와 업종 내 우량 중소형주를 동시에 편입
  : 각 업종 대표주 위주로 투자하되, 업종 내 우량 중소형주 발굴을 통해 추가 수익기회 창출 추구
- 성장성이 높고 진입장벽이 있는 금융업 및 실적이 좋고 장기성장성이 있는 제조업 등에 투자
- 각종 정책 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에 투자

※ 이 투자신탁은 베트남 주식 종목 선정 및 포트폴리오 구성 등 투자판단시 피데스자산운용㈜의 자문서비스를 참고하여 투자합니다.

회사명	피데스자산운용㈜
운용자산규모	총 7,685억원, 베트남운용 6,604억원 (2019.02월말 기준)
주요 사업	한국 및 베트남 주식의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
회사연혁	1998.04 회사설립 2007.07 피데스호치민사무소 개설 및 베트남 주식 리서치 시작 2008.10 베트남상장기업편람 창간(매년 2회 베트남상장기업투자가이드 발간)

<투자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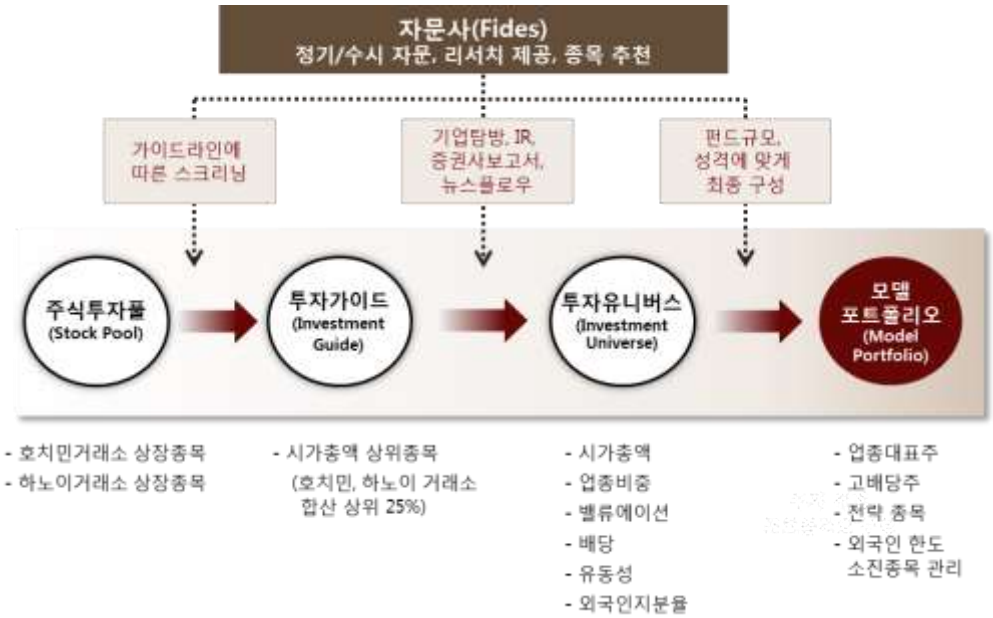

<포트폴리오 구성 방안>

- 시가총액, 업종비중, 밸류에이션, 배당, 유동성, 외국인지분율, 전략종목 등을 이용한 스크리닝을 통해 액티브 포트폴리오 구성
- 액티브 포트폴리오에 당사가 보유한 퀀트시스템을 이용한 퀀트 포트폴리오를 결합하여 최종 모델포트폴리오 결정

(2) 위험관리

- 운용역 개인의 독단의 의한 의사결정을 지양하기 위하여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은 자산운용전략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등에서 결정 합니다.
- 리스크관리본부에서 각종 법령 및 규정, 지침, 내규가 지켜지는 지를 모니터링하고 독립적으로 펀드의 실적 평가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합니다.

<환 위험관리>

-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구조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집합투자업자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아니할 계획입니다.
- 다만,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은 해당 자투자신탁의 환헤지 전략에 따라 환위험관리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VN Index(원화환산) × 80%] + [Call금리 × 20%]

VN Index(Vietnam Stock Index)는 호치민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시가총액 가중평균방식으로 발표되는 지수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수를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주)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상기의 전략은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전략이 반드시 유효하게 투자목적을 실현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 및 환율 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주요내용
원금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위탁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외국 주식에 투자하므로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경제·사회·자연현상 등의 영향을 받아 가격이 항상 급격히 변화하여 높은 위험을 지니는 투자대상인 주식의 시세 변화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환율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주식 외의 해외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으므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외화표시자산에의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의 관리를 위해 환헤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란 통화선물 및 선도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억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환헤지를 실행할 경우 외국통화의 가치가 원화에 대비하여 하락하는 때에는 환헤지포지션에서 이익이 발생하여 외화자산의 환손실을 상쇄함으로써 투자신탁의 성과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지만, 외국통화의 가치가 원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때에는 환헤지포지션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외화자산에서 발생하는 환이익을 상쇄함으로써 투자신탁의 성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환헤지에는 일정한 비용이 수반되며 이러한 비용은 투자신탁의 성과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접근 가능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과다한 비용을 수반하는 등의 사유로 환헤지가 용이하지 않은 통화로 표시되는 외화자산에 대해서는 헤지 거래를 실행하지 않거나 당해 통화와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은 통화로 대신하여 헤지 거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헤지가 적절히 이루어 지지 않거나 상당한 수준의 의도되지 않은 외환관련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외화표시자산에의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의 관리를 위해 원/달러 선물, 선물**

	환 또는 선도환 거래 등을 통해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원화와 USD간의 환율변동에 대하여 헤지하므로, 베트남 동화와 USD간에는 환차손 또는 환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 등에 집합투자재산을 일부 투자하기 때문에 피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서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또한,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표준화된 장내시장거래와 달리 거래의 이행을 보증하는 장치가 없고, 규제와 감독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거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적절한 시세가 형성되는 않는 등 일반적인 거래에 비해 높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 예금, 단기대출 등의 자산을 발행하거나 그와 관련한 채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러한 자산의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전액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동성위험	이 투자신탁이 집합투자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거래가 시장에서 충분하게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하여 손실을 유발합니다.
금리변동위험	금리는 경제・사회・자연현상 등의 영향을 받아 시세가 항상 변화하는 경제지표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일정 부분을 금리의 영향을 받는 채무증권 등 이자수입을 추구하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리의 상승 시 이러한 자산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금리의 하락 시에는 이러한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상환금 등의 재투자 수익이 하락하여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매매비용 과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목표의 달성 및 운용전략의 실행을 위해 빈번하고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매매는 높은 거래비용을 유발합니다. 빈번하고 적극적인 매매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매매의 결과로 인한 손익이 매매비용을 상쇄하지 못하거나 매매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자산의 시장가격이 변동할 경우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에 크고 작은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증권대여 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악화 등으로 인해 투자신탁 재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차입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증권 차입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차입자산을 공매도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인해 그 차액만큼 투자신탁재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및 운용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환매조건부 매도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RP)이란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입니다. 따라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거래는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을 지니며 레버리지 위험을 수반합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 미래의 경제 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신탁 재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베트남 시장의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

	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신흥시장국가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의 투자국가인 베트남은 신흥시장국가로, 일반적으로 신흥시장국가에 대한 투자는 선진국가에 대한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신흥시장국가는 법, 사법 및 규제 기반이 계속 발전 중에 있으며 또한 현지 시장 참여자 및 그 거래상대방 모두에게 많은 법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일부 신흥시장 국가의 경우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량이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불리한 가격으로 자산을 처분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여 투자원금의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시장 및 증권거래 시스템의 후진성으로 인해 투자대상 자산의 매매 불능 및 지연 등의 가능성이 있고, 상하한폭 변경 등 잦은 제도 변경으로 인해 투자대상 자산의 매매의 적시성 및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해외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국제금융결제와 관련한 송금지연 등 사유발생시 환매금액 지급연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신흥시장 국가의 경우 정치·경제적 불안정과 높은 수출의존도 등으로 통화가치가 선진국 통화에 비해 크게 변동하여 투자자산의 원화가치가 크게 하락하여 더 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주요내용
오퍼레이션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 폐장 및 개장시기의 차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운용과정에서 운영 위험이 국내 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환매가격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청구일의 기준가격 보다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의 기준가격이 낮을 경우에는 그러한 기준가격의 하락율 만큼 손실이 발생합니다.
환매연기위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매의 연기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는 보유하는 수익증권에 대해 심각한 환금성의 제약을 받게 되고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해지 위험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합니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합니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과세관련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수익자의 지위, 투자신탁재산의 구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대상자산으로부터의 손익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대상자산으로부터의 손익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자산으로부터의 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실이 있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부진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수준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각종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정가액 산정위험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이나 예금과 같은 시가평가가 곤란한 자산에 대해서는 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정가액이나 장부가 등을 반영하여 신탁재산의 평가를 합니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자산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수익자간 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위험	이 투자신탁의 운용자는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서 보유증권에 대하여 일정한 재량 하에 의결권이나 매수청구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의무에 다해 의사를 결정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 결과가 집합투자재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중지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 등의 자산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 자산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자산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등 거래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정기예금, RP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동성 자산의 경우 시장매각 제한,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의 축소 적용 등의 위험을 수반합니다.
대량환매위험	일시에 집중적인 대량의 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운용전략 상의 의도와 무관하게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효과적인 운용전략의 구사가 방해를 받거나 자산의 처분 자체가 처분가격 및 미처분 자산의 시장가격을 하락시킴으로써 투자신탁의 성과에 크고 작은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운용 교란 위험	투자신탁에 대한 설정 및 환매의 청구는 운용전략 상의 의도와 무관하게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거래를 유발하여 효과적인 운용전략의 구사를 방해하거나 자산의 시장가격형성에 영향을 주어 투자신탁의 성과에 크고 작은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유리자산운용㈜은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6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 표 "유리자산운용㈜의 위험등급 분류기준"과 같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산)이 18.6% 이므로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높은 수준인 2등급(높은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산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변경전·후 위험등급 및 변경사유

변경일	변경 전 위험등급	변경 후 위험등급	변경사유
2016.07.02	1등급	2등급	- 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 개편 (5단계 → 6단계)
2019.08.07	2등급	3등급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 (연환산) : 10% 초과 15% 이하
2020.07.31	3등급	2등급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 (연환산) : 15% 초과 25% 이하

- 이 투자신탁은 외국주식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한 위험이 유발하는 손실을 감내할 충분한 의사와 능력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전체 보유자산 대비 합리적 비중을 초과하여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거나 특정 기간 내에 용도가 정해져 있는 자금을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행위를 절대 금할 것을 권고합니다.

[유리자산운용㈜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연환산 표준편차 기준)]

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2등급 (높은 위험)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4등급 (보통 위험)	5등급 (낮은 위험)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표준편차	25% 초과	15% 초과 25% 이하	10% 초과 15% 이하	5% 초과 10% 이하	0.5% 초과 5% 이하	0.5% 이하

※변동성이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종류형은 운용펀드의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를 말하며 상기 위험등급 분류의 기준이 됩니다.

주1) 상기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유리자산운용의 내부기준으로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2)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리자산운용의 내부절차에 의한 판단에 따라 별도로 분류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한 매입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e)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개인연금(S-P)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주)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 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환매대금 지급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6영업일(D+5)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0영업일(D+9)**에 환매대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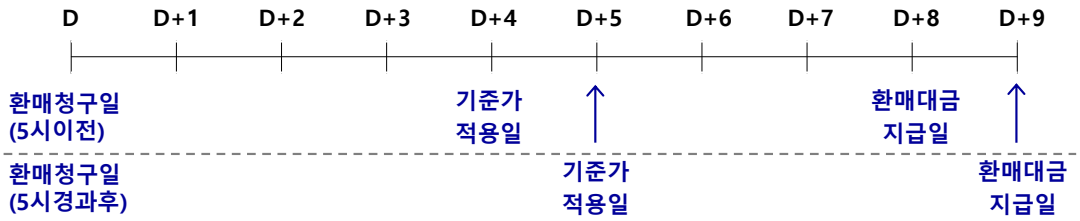

(다)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라)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3)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17시[오후 5시] 이전에 한 경우에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 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7영업일 전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8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1.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하지 아니합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 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해당사항 없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 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홈페이지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모투자신탁의 경우 부가되는 보수 및 수수료가 없으므로 자투자신탁과 기준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모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 기타비용등이 자투자신탁에 비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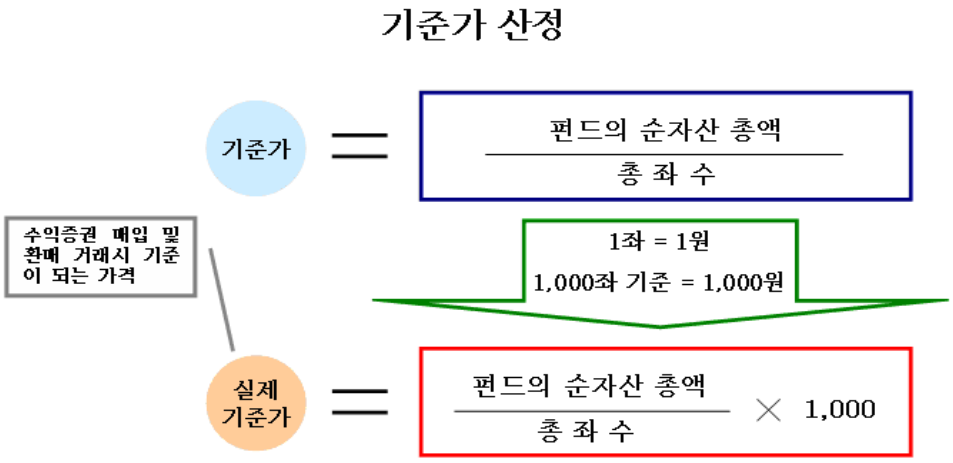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외화표시상장주식/상장채무증권	당해 투자 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 외화표시 증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의 평가는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해당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하는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상장채무증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함)
비상장채무증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위의 상장채무증권 평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장채무증권 포함)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되,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주) 상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은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 구성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
- 업무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함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e)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지급비율 (연간, %)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수탁회사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합성총보수·비용	(동종유형총보수)	증권거래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	0.66	0.96	0.06	0.015	1.695	0.003	1.698	1.825	1.950	0.131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e)	0.66	0.48	0.06	0.015	1.215	0.003	1.218	1.345	1.670	0.13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0.66	0.25	0.06	0.015	0.985	0.000	0.985	0.985	-	0.000
부과기준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사유발생시	-	-	-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 회계기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않은 종류 수익증권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기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비용 차감후)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작성기준 일 현재 설정되지 않은 종류 수익증권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4)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1,000만원을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천원]

종류	투자기간	1년 후	2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70	348	535	938	2,135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83	374	575	1,009	2,296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22	250	384	673	1,531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34	276	424	743	1,691

주)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 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익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2017년 1월 19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이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수익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으로 함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 (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금액] -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단,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 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금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주1) 판매회사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세제혜택을 위하여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연금저축 납입증명서(이하 "납입증명서"라 합니다)를 발급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가입자격위반 또는 투자한도초과 등 법령이 정하는 가입요건의 흠결이 확인된 경우에 판매회사는 납입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기간	감사의견	회계감사법인
제4기 (2019.07.13 ~ 2020.07.12)	회계감사면제	-
제3기 (2018.07.13 ~ 2019.07.12)	회계감사면제	-
제2기 (2017.07.13 ~ 2018.07.12)	회계감사면제	-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항 목	제4기	제3기	제2기
	2020.07.12	2019.07.12	2018.07.12
운용자산	10,510,623,410	13,606,554,559	9,794,065,755
유가증권	10,109,931,866	13,127,877,519	9,449,589,199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400,691,544	478,677,040	344,476,556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37,935,059	135,585,864	106,902,664
자산총계	10,548,558,469	13,742,140,423	9,900,968,419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86,524,980	315,510,360	400,135,951
부채총계	86,524,980	315,510,360	400,135,951
원본	11,163,400,427	12,945,227,007	9,500,832,468
수익조정금	0	0	0
이익조정금	-701,366,938	481,403,056	0
자본총계	**10,462,033,489**	**13,426,630,063**	**9,500,832,468**
운용수익	-1,119,521,000	573,549,147	-1,440,251,042
이자수익	1,198,132	1,866,685	1,444,968
배당수익	227,219,296	304,601,488	148,073,404
매매평가차손익	-1,347,938,428	267,080,974	-1,589,769,414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170,349,104	173,945,947	80,376,537
관련회사보수	170,049,254	173,662,377	80,259,797

매매수수료	0	0	400
기타비용	299,850	283,570	116,340
당기순이익	-1,289,870,104	399,603,200	-1,520,627,579
매매회전율	0	0	0

주1) 요약 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연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나. 대차대조표

[단위: 원]

항 목	제 4 기	제 3 기	제 2 기
	2020.07.12	2019.07.12	2018.07.12
운용자산	10,510,623,410	13,606,554,559	9,794,065,755
현금및예치금	400,691,544	478,677,040	344,476,556
현금및현금성자산	104,929,144	210,752,300	110,687,756
증거금	295,762,400	267,924,740	233,788,800
유가증권	10,109,931,866	13,127,877,519	9,449,589,199
수익증권	10,109,931,866	13,127,877,519	9,449,589,199
기타자산	37,935,059	135,585,864	106,902,664
매도유가증권미수금	37,924,740	135,473,994	104,497,151
정산미수금	0	0	2,382,000
미수이자	10,319	111,870	23,513
자 산 총 계	10,548,558,469	13,742,140,423	9,900,968,419
기타부채	86,524,980	315,510,360	400,135,951
정산미지급금	41,905,000	36,946,000	39,309,400
해지미지급금	9,467,001	105,658,396	116,107,948
미지급운용수수료	16,085,138	21,546,236	15,805,619
미지급판매수수료	17,231,003	23,013,159	16,458,602
미지급수탁수수료	1,462,238	1,958,706	1,436,931
미지급사무수탁수수료	365,560	489,642	359,274
수수료미지급금	9,040	10,560	7,730
미지급이익분배금	0	125,887,661	210,650,447
부 채 총 계	86,524,980	315,510,360	400,135,951
원 본	11,163,400,427	12,945,227,007	9,500,832,468
이익잉여금	-701,366,938	481,403,056	0
자 본 총 계	10,462,033,489	13,426,630,063	9,500,832,468
부채 및 자본 총계	10,548,558,469	13,742,140,423	9,900,968,419

총좌수	11,039,651,303	12,804,125,452	9,399,343,812
기준가격	950.86	1,036.9	1,000

주)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항 목	제 4 기	제 3 기	제 2 기
	2019.07.13 ~ 2020.07.12	2018.07.13 ~ 2019.07.12	2017.07.13 ~ 2018.07.12
운용수익(운용손실)	-1,119,521,000	573,549,147	-1,440,251,042
투자수익	228,417,428	306,468,173	149,518,372
이자수익	1,198,132	1,866,685	1,444,968
배당금수익	227,219,296	304,601,488	148,073,404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3,479,607,937	2,831,903,148	1,474,769,663
지분증권매매차익	28,686,937	237,325,643	403,719,663
파생상품매매차익	3,450,921,000	2,138,008,000	1,071,050,000
채무증권평가차익	0	456,569,505	0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4,827,546,365	2,564,822,174	3,064,539,077
지분증권매매차손	409,242,530	4,009,374	156,829,000
파생상품매매차손	3,730,189,000	2,560,812,800	1,340,307,600
채무증권평가차손	688,114,835	0	1,567,402,477
운용비용	170,349,104	173,945,947	80,376,537
운용수수료	77,751,218	79,827,980	37,470,547
판매수수료	83,463,346	84,763,565	38,531,242
수탁수수료	7,067,967	7,256,836	3,406,409
사무수탁수수료	1,766,723	1,813,996	851,599
매매수수료	0	0	400
기타운용비용	299,850	283,570	116,340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1,289,870,104	399,603,200	-1,520,627,579
좌당순이익(좌당순손실)	-107.09	34.99	-318.97

주)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백만좌, 백만원]

구분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투자신탁(전체)	2017/07/13~2018/07/12	942	942	15,893	19,154	7,435	8,910	9,399	9,745
	2018/07/13~2019/07/12	9,399	9,399	7,394	7,930	3,990	4,304	12,804	13,599
	2019/07/13~2020/07/12	12,804	13,277	2,659	2,565	4,735	4,548	11,040	10,49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	2017/07/13~2018/07/12	461	461	4,713	5,625	1,217	1,453	4,015	4,093
	2018/07/13~2019/07/12	4,015	4,015	2,708	2,890	751	797	6,049	6,317
	2019/07/13~2020/07/12	6,049	6,274	777	753	1,641	1,577	5,226	4,885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e)	2017/07/13~2018/07/12	487	487	11,061	13,287	6,120	7,291	5,486	5,619
	2018/07/13~2019/07/12	5,486	5,486	4,171	4,484	2,894	3,135	6,896	7,236
	2019/07/13~2020/07/12	6,896	7,152	1,780	1,686	2,819	2,663	5,937	5,577

주)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1)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3)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단위: %]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19/07/13~2020/07/12	2018/07/13~2020/07/12	2017/07/13~2020/07/12	2015/07/13~2020/07/12	2016/07/13 이후
투자신탁(전체)	-8.28	-1.31	0.33	-	3.41
비교지수	-6.7	1.09	3.86	-	5.57
수익률 변동성	22.57	18.95	18.6	-	16.7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	-9.85	-2.99	-1.37	-	1.97
비교지수	-6.7	1.09	3.86	-	5.68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e)	-9.41	-2.52	-0.9	-	2.16
비교지수	-6.7	1.09	3.86	-	5.57

주1) 비교지수 : - 2019년 10월 4일 이후 : [VN Index(USD) × 80%] + [Call금리 × 20%]

- 2016년 7월 13일 ~ 2019년 10월 3일 : [VN Index(USD) × 70%] + [Call금리 × 3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과세전의 수익률이며,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나타내는 수치로 운용펀드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5)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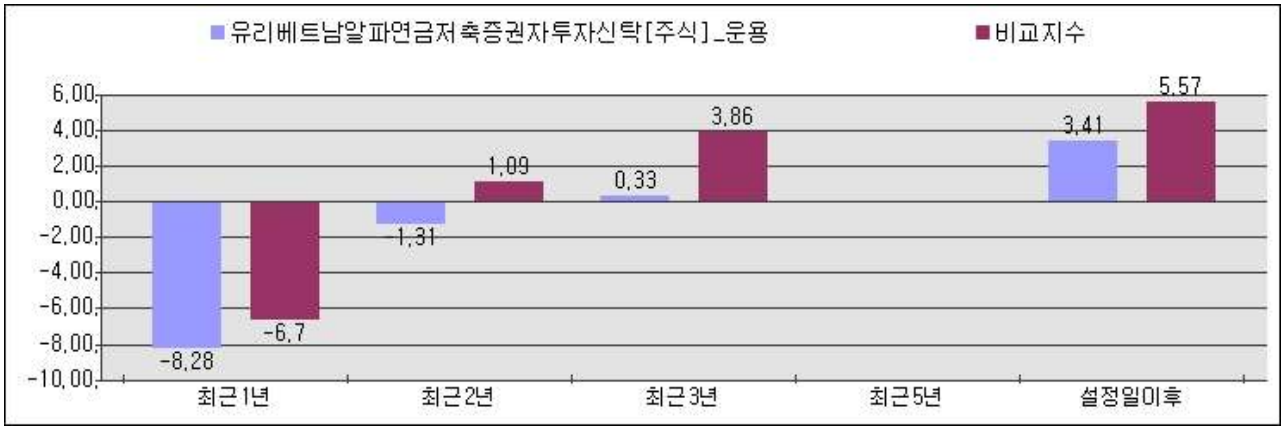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19/07/13~ 2020/07/12	2018/07/13~ 2019/07/12	2017/07/13~ 2018/07/12	2016/07/13~ 2017/07/12	2015/07/13~ 2016/07/12
투자신탁(전체)	-8.3	6.21	3.68	13.27	-
비교지수	-6.72	9.56	9.64	10.89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	-9.88	4.42	1.94	12.69	-
비교지수	-6.72	9.56	9.64	11.27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e)	-9.43	4.93	2.42	11.94	-
비교지수	-6.72	9.56	9.64	10.89	-

주1) 비교지수 : - 2019년 10월 4일 이후 : [VN Index(USD) × 80%] + [Call금리 × 20%]

- 2016년 7월 13일 ~ 2019년 10월 3일 : [VN Index(USD) × 70%] + [Call금리 × 3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과세전의 수익률이며,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20.07.12 현재 / 단위 : 백만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대한민국	0	0	0	10,110	296	0	0	0	0	105	38	10,549
비중	(0)	(0)	(0)	(95.84)	(2.8)	(0)	(0)	(0)	(0)	(0.99)	(0.36)	(100)
자산합계	0	0	0	10,110	296	0	0	0	0	105	38	10,549
비중	(0)	(0)	(0)	(95.84)	(2.8)	(0)	(0)	(0)	(0)	(0.99)	(0.36)	(100)

주) 비중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자산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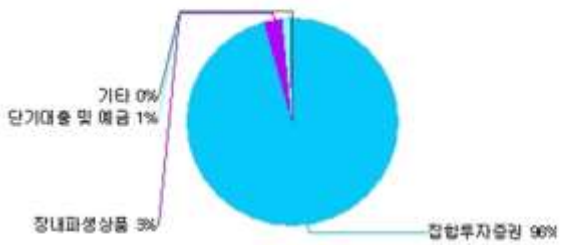

[모집합투자기구의자산구성현황]

유리베트남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20.07.12 현재 / 단위 : 백만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베트남	218,603	0	0	0	0	0	0	0	0	18,131	0	236,734
비중	(92.34)	(0)	(0)	(0)	(0)	(0)	(0)	(0)	(0)	(7.66)	(0)	(94.72)
대한민국	0	0	0	0	0	0	0	0	0	3,236	8,303	11,539
비중	(0)	(0)	(0)	(0)	(0)	(0)	(0)	(0)	(0)	(28.05)	(71.95)	(4.62)
미국	0	0	0	0	0	0	0	0	0	1,652	0	1,652
비중	(0)	(0)	(0)	(0)	(0)	(0)	(0)	(0)	(0)	(100)	(0)	(0.66)
자산합계	218,603	0	0	0	0	0	0	0	0	23,019	8,303	249,925
비중	(87.47)	(0)	(0)	(0)	(0)	(0)	(0)	(0)	(0)	(9.21)	(3.32)	(100)

주) 비중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자산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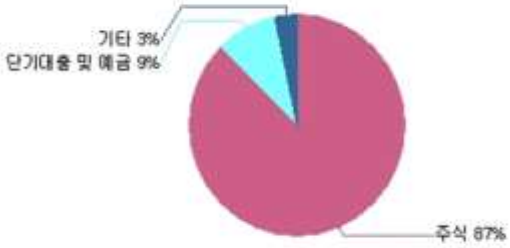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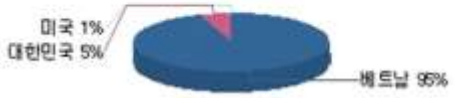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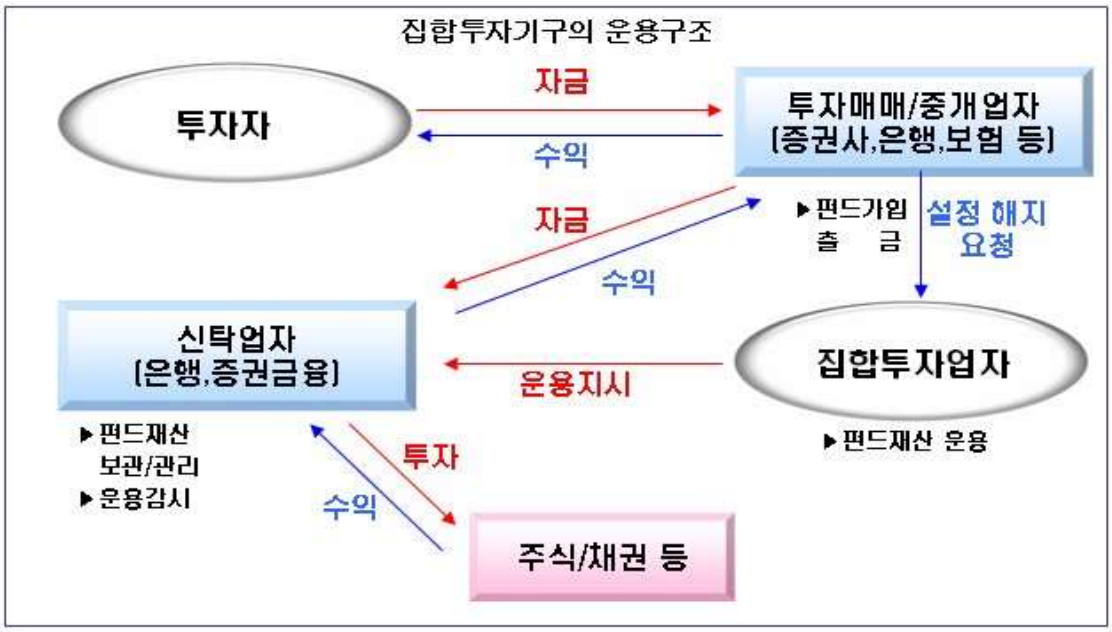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유리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7 (여의도동) ☎ 02-2168-7900
인터넷홈페이지	www.yurieasset.co.kr
회사연혁	1998.10 회사설립 1999.08 자산운용회사 등록 1999.10 뮤추얼 펀드 판매 게시 2000.03 투자자문업등록 2000.05 투자일임업등록
자본금	153억
주요주주현황	부국증권㈜ 99.9% /우리사주조합 0.1%
이해관계인	판매회사 중 부국증권주식회사는 집합투자업자는 유리자산운용주식회사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나. 주요 업무

○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계정과목	FY2019(22기)	FY2018(21기)	계정과목	FY2019(22기)	FY2018(21기)
유동 자산	39,253	36,384	영업 수익	15,845	15,919
비유동 자산	4,558	4,041	영업 비용	10,832	10,780
자산 총계	43,811	40,425	**영업 이익**	5,014	5,139
유동 부채	1,549	2,009	영업외 수익	0	28
비유동 부채	55	55	영업외 비용	46	41
부채 총계	1,604	2,064	**세전 순이익**	4,968	5,126
자 본 금	15,300	15,300	법인세 비용	1,122	1,193
자본 잉여금	198	198	**당기 순이익**	3,846	3,933
이익 잉여금	26,709	22,863			
자본 조정	-	-			
기타포괄손익누계	-	-			
자본 총계	42,207	38,361			

라. 운용자산규모

(2020.06.30 기준, 단위: 억)

구분	증권				파생형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재간접					
수탁고	38,581	740	62,098	-	2,570	6	158	-	104,153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피데스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97 교보증권빌딩 14층 ☎ 02-567-8400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fides.co.kr

(2) 주요업무
베트남 투자 종목 선정 및 포트폴리오 구성 등 투자판단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국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 1588-9999
인터넷홈페이지	www.kbstar.com

(2)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 의무
① 신탁업자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수익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지 여부

○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하나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43 ☎ 02-6714-4600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hanais.co.kr/

(2) 주요업무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을 평가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 업무를 수행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는 관련법령 및 그 하위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관련법령 및 신탁계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 02)2251-13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 02)3215-14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 02)398-3966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 02)721-5300
홈페이지	www.koreabp.com	www.bond.co.kr	www.nicepni.com	www.fnpricing.com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입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②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사유 중 이 투자신탁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③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 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 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1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관련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및 법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제외는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명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으로 정하는 경우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①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해당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포함한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

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③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 해당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①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 해지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② 상기 3) 및 4)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법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의 소규모펀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해소 및 관리 정책, 발생의 사전 억제 정책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해소 및 관리 정책

- 금융위원회의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정리계획을 '임의해지',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합병', '모집합투자기구 이전'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립한 정리계획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정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신규 공모 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서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
-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정리 이행실적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금융감독원장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합니다.

▶ 발생 사전 억제 정책

- 신규 집합투자기구 등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 반영하고, 신규 판매시 판매회사에 해당사실을 알려 투자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 신설 및 종류 수익증권 추가를 위한 경우이거나, 설정 시부터 소규모 집합투자기구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기구 설정 후 6개월간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 주금, 지분증권 대금의 잔액 등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당사의 대표 집합투자기구(투자대상자산이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당사가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된다는 사실
2. 집합투자기구 설정 1년 후에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해지',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합병', '모집합투자기구 이전'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정리된다는 사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투자신탁의 해지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②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이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 기타 법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①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법 제247조제5항 각호의 사항
- 법시행령 제27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②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 포함)이 발생한 경우 이를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②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제2호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위험지표의 공시 :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 분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	<선정원칙> -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 거래 유형(예 : 상장주식매매, 차익거래매매, 파생상품매매, 채권매매 등)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회사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리스크가 과다하지 않은 회사
	<평가 절차 및 방법> - 평가 요소 : 매매체결능력/중개수수료/정보제공의 정도/조사분석자료의 질/결제이행능력 - 평가 주기 : 분기별 평가를 원칙으로 함 - 평가주체(포트폴리오 매니저, 애널리스트, 트레이더)는 개인별로 평가표를 작성. 다만, 평가주체 개인별 평가가 어려운 항목은 부서별 평가 가능 - 평가 결과는 각 본부별로 집계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고, 결과 제출 시 개인별 평가표도

	함께 제출 - 포트폴리오 매니저와 애널리스트는 주요 펀드운용/투자관련 정보 및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투자중개업자의 역량(시장정보 등 자료제공, 세미나 지원, 기업방문 등) 및 업무담당자(리서치센터, 법인영업팀)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트레이더는 주문체결의 정확성, 체결단가의 적합성, 시황, 매매동향 등 정보사항의 신속한 제공, 유동성 제공, 투자중개업자의 재무상태, 자금결제의 안정성 및 업무담당자(Sales, Sale Trader, Dealer)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

<참 고> 펀드용어 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이란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종류형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